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가단115740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6 선고 2021나22297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가단115740 판결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B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정형윤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우

담당변호사 이성이

변 론 종 결 2021. 9. 14.

판 결 선 고 2021.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4. 26. 접수 제717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의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상환 채무에 대하여 2016. 4. 29. 보증금액 200,000,000원, 대출금액 200,000,000원,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보증비율 100%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D는 2019. 5. 21. 원금연체를 이유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9. 8. 28. D를 대위하여 기업은행에 합계금 202,359,665원을 변제하였다.

다. D의 대표이사인 A은 1996년 경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하여 오다가 2019. 6.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2009년 생인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정하고,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라. 1) A은 2019. 2. 26. 피고에게 시가 120,000,000원 상당의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3325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당시 위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87,6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위 증여 당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는 73,000,000원이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0. 6. 10. 피고의 변제로 말소되었다.

마. A은 2019. 4. 25. 피고에게 시가 120,000,000원 상당의 별지 2 기재 부동산을 증여(별지 1, 2 기재 부동산의 각 증여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4. 26. 접수 제7170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1)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9. 10. 17. A을 상대로 연대보증의 책임을 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A과의 별지 목록 제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사해행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A은 의정부지방법원에 2020하단21112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29. A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함과 아울러 변호사 B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3) 변호사 B는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이후 원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소송 중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13,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주식회사 E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와 같은 날 작성된 투명경영이행약정에 의하면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D와 피고 사이에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은 허위의 상가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투명경영이행약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문서, 사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자료 제출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A은 투명경영이행약정 제3조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에게 D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진다. A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A의 적극재산은 633,035,719원에 불과하였던 반면 소극재산은 908,640,500원에 달한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위 각 증여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한다. 위 각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 그 전부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그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의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그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47,000,000원을 가액배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 보조참가인과 D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A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투명경영이행약정은 보증기업, 보증약정 등 주요사항이 공란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A은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는 협의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로써 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C은 D의 경영상황 및 재무상태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이다.

3. 피보전채권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투명경영이행약정 위반으로 인해 A은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해 D의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지는 않은 점, ②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동일한 날 작성된 투명경영이행약정서(이하 '이 사건 투명경영이행약정서'라고 한다)의 약정인 란에 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아래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아래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보증기업에 대한 경영의무의 이행을 목적으로

합니다'란에 보증기업, 신용보증약정, 보증원금, 보증기간란이 모두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 점, ③ 이 사건 투명경영이행약정서 하단에 '약정인은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라는 기재가 있으나 그와 관련한 A의 자필기재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투명경영이행약정서 제2조 제3호에서는 '공문서, 사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자료제출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이 상가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를 위조하였다거나 허위로 만들어 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투명경영이행약정의 목적은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대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하게 하기 위함인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A이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거나 허위로 만들어 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투명경영이행약정이 지향하는 경영의 투명성, 준법경영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보조참가인이 A에 대해서 이 사건 투명경영이행약정 및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을 가진다는 원고 주장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에 대한 판단

가정적으로, 원고 보조참가인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부인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파산관재인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성격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7, 8,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과 피고는 1996년 경 혼인신고를 마친 점, A은 2014. 9. 25.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A은 2019. 2. 22. 피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목적으로 증여하기로 합의하였고, A은 2019. 2. 26.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9. 4. 25. 피고에게 별지 2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다음 날인 2019. 4. 26.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A과 피고는 2019. 6.경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와 A의 혼인기간,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취득시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체결일시, 체결 경위와 그 이후 피고와 A이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와 A의 혼인기간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피고와 A이 이혼하면서 그 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재산분할의 상당성

앞서 든 증거, 갑 제3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7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대상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240,000,000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 재산 분할 당시 별지 1기재 부동산에는 피담보 채무 73,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가 A으로부터 분할받은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는 167,000,000원이다.

② 피고가 A과 협의이혼을 할 당시 광명시 F 지하 G호(이하 ‘광명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사실이나, 그 매수자금 350,000,000원은 피고가 중소기업은행 및 친인척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 매수에 A의 기여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와 A의 협의이혼당시에 광명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88,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기도 하였다.

③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A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외에도 기업은행 및 E에 대한 각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H리조트회원권, 리스차량보증금, 국민연금 기납부 보험료 등의 적극재산이 있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당시 A의 적극재산은 633,034,719원에 불과한 반면, 소극재산은 908,640,500원에 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소극재산 중 원고 보조참가인의 채권 2억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주장의 소극재산에 피고에 대한 위자료 채무 1억 원 또한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A이 채무초과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⑤ A과 피고의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점, 피고가 혼인기간 중 육아를 전담한 것으로 보이고, 협의이혼시 피고가 미성년 자녀(2009년 생)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었으며, 피고와 A 사이에 2019. 2. 22. 작성된 협의서에는 A이 피고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인 2019. 6. 5. 작성된 양육비 부담조서에는 피고가 자녀에 대한 모든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현재 A은 파산 절차 진행 중이어서 A이 양육비를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보라

별지